

「2026년 한국중부발전 시니어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한국중부발전 소재 지역 내 노인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2026년 한국중부발전 시니어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1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한국중부발전 시니어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사업목적) 한국중부발전 소재지* 내 신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지역 상생 도모
 - * 충남 보령시, 충남 서천군 세종특별자치시, 경남 함안군, 서울 마포구, 인천 서구, 제주 제주시
- (사업기간) 2026. 7. 1.(월) ~ 2026. 12. 31.(목)
- (지원규모) 총 2억 원(지원유형별 지원 규모 상이)

2. 지원 내용

○ (공모내용) 'ESG형' 및 '창업형'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모집

구분	유형	지역	사업내용	인원	지원 예산
합 계				22+a	200,000,000원
1	ESG형	충남 보령시	○ 전통시장·취약계층 통합지원 사업	16명	50,000,000원
2		충남 서천군	○ 이동식 편의점 2호점	6명	70,000,000원
3	창업형	보령, 서천 외	○ 신규 공동체 사업단 창업	0명*	80,000,000원

* 정해진 채용인원은 없으며, 신청 수행기관에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작성하여 제출

세부 사업내용

① (ESG형) 지역사회 상생형 위한 '전통시장·취약계층 통합지원 사업'

- (취약계층) 찾아가는 생활지원 서비스(주거 수리, 도시락 배달, 생필품 판매) 운영
- (전통시장) 매출 증대, 안전 점검, 재활용 자원 수거, 일손 지원 시행

지역상생

찾아가는 통합돌봄

- (안전) 취약계층 주거 개선·수리
- (먹거리) 지자체 통합돌봄 도시락 배달
- (나눔) 방학 중 어린이 도시락 무상 지원
- (편의) 취약계층 대상 이동식 편의점 운영*
- * 전통시장 물품 공급 연계 생필품 판매

+

전통시장 통합지원

- (안전) 전통시장 안전 개선·수리
- (환경) 재활용 자원 수거
- (일손) 시장 특산품(머드빵) 생산 지원
- (매출) 전통시장 물품 구매*
- * 식당, 반찬가게 사업단 재료 구매

② (ESG형) 지역 내 높은 수요를 반영한 '이동식 편의점 2호점'

- (대상 확대) 편의점 운영 확대 : ('25년) 2개 면 → ('26년) 6개 면
- (서비스 확대) 기존 생필품 판매 외에 '칼 연마', '상비약 판매' 추가

식품사막화 및 의약품 사각지대 해소

'25년 사업

- (생필품) 교통취약지역 이동식 편의점 운영
→ 2개면 29개 마을 월 2회 운영
- (거점매장) 소매, 배달 물품 예약 접수
- (편의) 장보기 대행, 생활용품 무상배달

→

주민 수요 기반 '26년 사업 확대

- (운영확대) 이동식 편의점 차량 1대 증대
→ 6개면으로 운영지역 확대
- (편의확대) 찾아가는 칼 연마 서비스 신설
- (의약품) 무약촌 마을 상비약 판매 도입

③ (창업형) 지역사회 수요 기반 노인 일자리 사업

- (사업내용) 지역 현안 연계 등 지역 맞춤형 노인 일자리 신규사업
- (대상기관) 경남 함안군, 세종시, 서울 마포구, 인천 서구, 제주 제주시 내 신규 공동체 사업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3. 신청 대상 및 신청 제한

- (신청대상) ①한국중부발전 소재지 내 위치한(지원사업별 상이),
②「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수행기관이며,
③신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기관
- (ESG형) 신규 '노인공익활동',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선도모델 사업'
- (창업형) 신규 '공동체사업단'
- (신청제한) 최근 3년('23~'25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현장점검 결과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기관

4. 심사 및 선정

- 선정절차 및 심사기준

구분	1차	2차
심사구분	서면 심사	대면 심사(PT 발표)
심사일정	6.15.(월)~16.(화)	6.18.(목)
심사주체	개발원 담당자	내·외부 전문가
심사내용	제출 서류 적격 여부 확인 (신청자격, 신청서류 등)	사업 수행 계획, 수행 능력,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평가
심사기준	서류 적격여부	70점 이상 득점(100점 기준) 중 고득점 순위
결과안내	6.19.(금) 예정	

※ 심사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PT발표의 경우 1차 심사 합격기관에 한하여 별도 안내

5. 접수 기간 및 접수 방법

- (접수기간) '26. 6. 1.(월) ~ '26. 6. 12.(금), 18:00*

* 휴일 및 18시 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마감일 18:00까지 접수

-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 또는 등기 우편 제출

- (접 수 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7층

- (제출서류) 공문, 신청서, 이행서약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업계획서, PT 발표자료

- (제출방법) 제출서류는 폴더에 압축하고 파일명은 기관명으로 제출

- (문 의 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전충남지역본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송희근 대리	042-719-1390	hkhk@kordi.or.kr

6.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기관별 접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선정기관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사업수행과 관련한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음
- 본 사업 예산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교부되며,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붙임3 참조)

<붙임1> 공모사업 심사 기준

<붙임2> 공모 신청서류 작성 안내

<붙임3>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편성기준표

붙임 1

공모사업 유형별 심사 기준

□ 창업형

구분	심사항목	배점
사업계획 (30점)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 타당성 시장 및 상품·서비스에 대한 이해 수준, 계획의 구체성·적절성	15점
	판로 확보 및 홍보 계획 적절성 사업 진행 시 생산품 고정 판매처 확보 및 홍보 계획 등 적절 여부	15점
수행능력 (30점)	사업 운영 의지 및 사업 이해도 신청기관의 사업 운영 의지 및 사업 이해도·적절성 등	10점
	사업화 기반 보유 및 활용 사업화를 위한 협력 기관 등 기반 구축(예정) 활용 가능 여부	10점
	업무 지원 능력 직원 중 지원 분야의 국가 및 관련 단체 자격증 보유 및 경력 유무, 참여 인력의 역량 등 경쟁력 확보 여부, 유사 사업 실적 등	10점
사업효과 (40점)	고용 및 수익 창출 효과 고용 및 수익 창출 가능성	10점
	추가 연계사업 확대 가능성 향후 사업단 전국화 등 확대 가능성 및 파급력	10점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의 지역 문제 해결 여부 및 사업 필요성 등	20점

□ ESG형

구분	심사항목	배점
사업계획 (30점)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 추진 적정성, 계획의 구체성	15점
	예산 편성 목적의 적절성 사업비 지원을 통한 시설투자, 장비구입 등 목적의 적절성	15점
수행능력 (30점)	신청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 신청기관의 유사 사업 실적, 기관장 및 실무자의 사업 운영 의지 및 사업 이해도 적절성 등	15점
	신청기관의 사업화 인프라 보유 및 활용 사업화를 위한 협력 기관 등 인프라 구축(예정) 및 활용 가능 여부	15점
사업효과 (40점)	고용 창출 효과 노인 일자리의 양적, 질적 창출 효과	10점
	추가 연계사업 확대 가능성 향후 사업단 전국화 등 확대 가능성 및 파급력	10점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의 지역 문제 해결 여부 및 사업 필요성 등	20점

붙임 2

공모 신청서류 작성 안내

□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는 「2026년 한국중부발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계획을 토대로 신청서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

- 본 공모 계획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지로 첨부하여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

□ 사업계획서 상의 인용 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는 반드시 명시

□ 신청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반드시 제출

□ 계획서에는 반드시 페이지수(Page)를 기재

□ 제출서류는 폴더에 담아 압축하고 파일명은 기관명으로 제출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이메일 제출 및 등기 우편 제출 중 선택하여 제출

① 신청 공문

② 공모 신청서 <서식1>

③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④ 이행서약서 <서식2>

⑤ 사업계획서 <서식3>

⑥ 발표자료(PPT) * 발표시간 10분 이내

⑦ 사업 관련 견적서(장비 구입 시)

- '26. 6. 12.(금) 18시까지 도착한 건에 대하여 접수

<서식 1> 공모 신청서

<서식 2> 사업 이행 서약서

<서식 3> 사업계획서

<예산편성기준표>

※ 예산편성기준표는 최대 지급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이 가능함.

항 목		기 준	사용한도	비고
강 사 비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이상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또는 국영기업체장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등 전문직 종사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로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 1시간 최대 3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150,000원	·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동일 법인이라도 사업장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타 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 ·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 · 사회복지 등 해당 강의 관련분야 기관·시설장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등 전문직 종사자 ·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 1시간 최대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150,000원	· 강의시간 30분 미만은 강의 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 온라인 강의 강사비 지급기준은 [온라인 강의 강사비 지급기준참고]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중소기업체 임원급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인간문화재·유명예술인 등 보조출연자 · 통계이론, SAS, SPSS 등의 전문가 · 박사학위소지자 · 특별강사, 일반 1급 및 일반 3급을 제외한 자 · 사회복지 등 해당 강의 관련분야 기관·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등 전문직 종사자 ·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 1시간 최대 230,000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120,000원	

항 목		기 준	사용한도	비고	
	3급 강사	·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 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체육, 레크레이션 등 전문강사 · 사회복지 등 해당 강의 관련분야 기관·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가 없는 자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등 전문직 종사자 ·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 1시간 최대 1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10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최대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30,000원
	다수인 출강	· 2시간 이하	· 5인 이하 최대 33만원 · 6~10인 최대 45만원 · 11인 이상 최대 66만원		
		· 2시간 초과	· 5인 이하 최대 38만원 · 6~10인 최대 55만원 · 11인 이상 최대 8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하	· 100,000원		
		·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함)	· 130,000원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3면을 A4 1면으로 산정 -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면으로 산정	· 12,000원 * 시간당 6매까지만 인정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동일법인이라도 사업장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타 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	
단순인건비		· 1인/1일 (1일 8시간 기준/ 중식비 포함) ※ 월 60시간, 1개월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필수	· 2025년 인건비 기준에 따라 편성 - 단순인건비 90,240원 (중식비 10,000원 포함) - 주휴수당 80,240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식사비 등의 활동비(1회 기준, 예산한도 내 실비지급)	· 30,000원 이하	·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봉사활동에 실제 소요된 경비에 한해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증빙 가능해야함(암직원 자원봉사 활동비 제외) 지급증 필수 첨부(활동명, 활동 시간 및 지역, 소요비용 및 산출 근거 표기)	

항 목	기 준		사용한도	비고
출장여비	· 시내여비		· 실비	· 일비, 식비는 해당 시·도를 벗어나는 출장에 적용
	· 시외여비	교통비 (KTX일반, 고속버스, 전세버스 등)	· 실비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밖으로의 출장으로 왕복 거리가 12km 이상인 출장에 대해 시외출장 적용.
		일비(1인 1일)	· 25,000원	단, 육로 120km(왕복) 또는 수로 60km(왕복) 미만의 출장에 있어서는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함.
		식비(1인 1일)	· 25,000원	· 기관차량 이용 시 일비의 2분의 1만을 지급(단, 숙박 시 전액 지급 가능)
		숙박비(1인 1실)	·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원, 그 밖의 지역 80,000원)	· 출장지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식비를 제외하고 지급 (예. 교육 참석 차 왕복 120km 이상의 지역으로 시외출장 시 점심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식비의 2/3만 지급)
숙박 행사 (워크숍, 캠프 등)	· 1인 기준		· 180,000원	· 1박2일 기준(한도 내에서 숙박비, 식비, 다과비 통합하여 사용 가능) · 숙박일수 추가 시 추가되는 일수 당 기준단가 적용 · 진행비(교통비, 대관료 등) 실비 적용하여 별도 편성 · 사용한도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모금회의 사전 승인 필요
식사비	· 1인 1식 기준		· 15,000원	· 나들이, 체험활동 등 외부활동 프로그램 및 행사 에 한하여 식사비, 다과비의 경우 통합(22,500원)하여 사용 가능
다과비	· 1인 기준		· 7,500원	· 참석자가 모두 내부직원일 경우 지출 불가 · 온라인으로 회의, 강의 등을 진행할 경우 지출 불가(식사 및 다과를 대신한 기프트콘, 쿠폰 지급 불가)
자문비	· 1시간 이하 1회		· 100,000원	· 슈퍼비전기록 필히 첨부 ·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 시외의 경우, 교통비 실비지급 가능 · 1일 상한액 30만원
	· 1시간 초과 1회		· 130,000원	
	· (공식) 서면자문 1회		· 100,000원	
	· 공통사항 : 자문 내용 기본 양식(A4 용지 1매 기준, 글씨크기 13 point, 줄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25, 머리말·꼬리말 15) ※ 서면자문 양식은 사업수행안내자료를 통해 별도 제공 예정			

항 목		기 준	사용한도	비고
세미나 토론회 등	토론	· 1시간 이하 1회	· 100,000원	·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동 일법인이라도 사업장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타 기 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 · 교통비(실비)는 필요사유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 1시간 초과 1회	· 130,000원	
	기조 연설, 발제, 사회	· 1시간 이하 1회	· 200,000원	
		· 1시간 초과 1회	· 300,000원	
번역료		·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요율표 기준 (매해 발표되는 기준 참고, 시행시점 가장 최근 자료 이용) ※ 단, 전문기관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원고 및 통·번역자료에 대해서는 별도계약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수어통역		· 1인 1시간 기준	· 150,000원	· 개인으로 활동하는 수어통역사 기준이며, 수어통역 관련 단체 (업체)를 통하는 경우 해당 단체 (업체)의 단가 적용

※ 유의사항

- 강사비 초과시간의 계산 방법 : 같은 날짜에 동일대상에게 동일내용(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강의를 하여도 두 번째 시간부터는 초과시간으로 계산함. 또한, 2일 이상에 걸쳐 동일대상에게 동일내용(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제2일차부터는 초과시간으로 계산함
- 다수인 출강 : 1개의 프로그램에 2인 이상의 강사가 참여하는 교육
- 자원봉사활동비 : 실비개념으로 봉사활동에 3만원 한도 내로 실비 지급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아래의 최대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자문료 등)

구분	최대한도금액 (동일과정)	
	1시간이내	1시간초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40만원	60만원
공적 업무 종사자 (각급 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	100만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온라인 강의 강사비 지급기준>

유형	강의 방식	지급 단가	비고
녹화형 강의	- 오프라인 강의를 그대로 촬영하여 사이버 강의화 한 콘텐츠 - 강사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별도로 원고를 작성하고 직접 출연하여 제작한 콘텐츠	- 오프라인 강의 강사료 - 강사출연비 : 시간당 10만원 이내 ※ 최종 편집된 영상의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함	- 강사출연비는 강사의 촬영 동기 요인 강화 및 다회 노출 부담에 대한 보상 - 녹화된 영상을 반복 없이 1회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사출연비를 지급하지 않음
실시간 라이브 강의	- 강사와 강의대상이 특정 시간에 원격 강의에 참여하여 진행하는 방식	- 오프라인 강의 강사료	- 실시간 라이브를 녹화하여 반복 사용하는 경우에는 녹화형 강의에 준하여 강사출연비 지급

※ 유의사항

1. 상기 기준은 지급 가능한 최대금액으로 강의의 난이도, 내용 등에 따라 제시된 한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2. 영상물의 저작권에 관하여 불임의 양식에 따라 강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콘텐츠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저작권)는 기 체결한 배분사업 표준계약에 의거, 수행기관과 모금회에 귀속됨.
3. 강의시간은 최종 편집된 영상에서 강의가 진행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참여자의 시청 편의를 위하여 영상을 분할 편집한 경우에는 총 영상 시간의 합으로 계산함.
예) 강의 전후로 기관소개 영상 등을 포함한 경우, 강의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음.
4. 강사료 및 강의출연비에 대한 비용 산출 시 강의시간 30분 미만은 강의 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단, 녹화형 강의에 한해 30분 미만은 기준 단가의 2분의1 한도 내에서 지급)
5. 강사가 제작한 강의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6. 영상물 제작시 모금회의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영상임을 표시하여야 함.
예) "강의명" 영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고삽입)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7. 지원사업으로 제작한 영상을 통한 광고·수익 창출은 불가함.